

서울특별시의회
제331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5. 6.

서울특별시의회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김 경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올해 하반기 서울시립사진미술관과

서울시립서서울미술관의 개관을 준비하는 시점에서

소장미술관자료의 원활한 관리 및 출납을 위해

별도의 분임 관리 책임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

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

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여,

서울시립미술관 운영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,

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23조제1항의 경우,

소장미술관자료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한
별도의 관리책임자 지정 조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<별표>의 경우,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을
현행화 함으로서 최신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